

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

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)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

1.신원인수인의 권리

- 1)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,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요청 할 권리가 있다.
- 2)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2.신원인수인의 의무

- 1)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 하여야 한다.
- 2)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3)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.
- 4)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진다.
- 5)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.

3.이용자의 책임 이행

계약서(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(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)또는 「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」 내역에 대한 실시예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야 한다.

4.계약의 해제

- 1.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.
- 2.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- 1)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
 - 2)계약기간 만료 할 때
 - 3)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할 때
 - 4)수급자 사망 할 때
 - 5)수급자가 2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
 - 6)수급자 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
 - 7)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,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
 - 8)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
 - 9)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.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
 - 10)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 하였을 때(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)
 - 11)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
 - 12)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
 - 13)폭행, 욕설,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,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
 - 14)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- 15)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.

5.계약의 해제 절차

- 1.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종결을 원 하거나, 제20조[계약해지]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, 수급자 (또는 보호자)와 기관은 서면통보 또는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한다.
- 2.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(연 2 회).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6.센터의 의무

- 1.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.
- 2.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- 3.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(보호자)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.